

대법원 2020. 12. 10 선고 2020다4130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12. 10 선고 2020다41309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0. 7. 22 선고 2019나6674 판결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. 9. 4 선고 2018가소41533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

피고, 상고인 B 주식회사

판결 선고 2020. 12. 10.

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. 7. 22. 선고 2019나6674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안철상

대법관박상옥

대법관노정희

주심대법관김상환